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08.10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강남구 논현동 106-21외 1필지 신축사업 / 강남구 논현동 106-21,22		
의결번호	2018-구조13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<p>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< 구조안전 분야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장 창유리 설계시창유리 고정철물의 안전을 시공 전 사전확인토록 명기하고 대지가 주변보다 높은 것(지형활증)과 주변 고층건물군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안전을 확인하여 반영하기 바람. ○ 지하1층~지하3층의 X1열과 Y6-X1~X8 지하 최외측 내력 옹벽과의 연결 보단부의 상세 확인 바람. ○ 풍동실험 결과를 적용한 사용성 평가시 주거용 건물로서의 적정성을 재확인 바람. ○ 건물 폭 14m, 높이 74.5m의 가늘고 긴 건물이 무리한 전이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지하3층 주차대수(2대)를 조정하면 상부 벽식구조 대부분을 기초까지 지지되는 튼튼한 구조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. ○ 지하층만 철골조로 설계되어 있고 지상구간은 RC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기 단축이 거의 되지 않는 구조시스템으로 지하구간도 RC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바람(권장). ○ 전이보 계획시 설비배관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슬래브 하부 300mm를 확보하고, 전이보를 300mm 내렸는데 전이보에 대한 검토시 상기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하기 바람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8.08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08.10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강남구 논현동 106-21외 1필지 신축사업 / 강남구 논현동 106-21,22		
의결번호	2018-구조13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<p>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 < 구조안전 분야 >(계속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지하층 데크 사용시 누수에 대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자재선정 바람.○ 인접필지에 같이 설계되어 있는 건물과의 거리로 지진시 발생할 수 있는 변위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.○ 지하1층~지하3층 철골보 SB1(H-396×199×7×11)의 경우 처짐 및 진동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.○ 철골보의 경우 시공시 횡방향 지지에 대해 구조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.○ 전이층 하부의 경우 내진배근이 될 수 있도록 구조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.○ 전이보(TG2:1,900×2,200)의 경우 매스콘크리트에 대한 검토 및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.○ 구조도면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날인을 하기 바람.○ 풍진동에 대한 검토 여부와 완화조항 적용에 대하여 정리 바람. 끝.			

2018.08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